

하도급거래 가이드 라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사의 부당한 이익 침해 및 불공정한 비용전가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시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룹사에서는 사전 자율점검 등의 예방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당사에게 주로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공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참고하시어 추후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작업지시/계약체결

○ 서면교부 의무 준수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사가 서명한 서면을 작업지시 前 수급사업자 교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공사 :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 대체 요함)
- 서면 미교부 시, 수급자 위탁내용 확인 요청하는 경우 15일내 인정/부인의사 서면발송 의무화
(15일 경과시, 수급사업자 통지 내용으로 위탁계약 추정 및 간주)

○ 부당특약 금지

- 서면 작업지시 및 계약내역에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시공 및 제작/납품 요구
- 민원처리, 산업재해비용 등 원사업자 부담원칙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약정 등

□ 대금지급

- 선금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받은 내용/비유에 준하여 하수급인에게 15일내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미수령 시에도 지급)
- 하도급대금 가압류 時 : 가압류를 이유로 미지급 불가 → 법정 지급기일 內 공탁해야 적법
- 정산합의 지연 時 : 하도급사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도 법정 지급기일 內 당사 인정금액 공탁 要

□ 변경계약 (하도급대금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ESC발생에 따른 공사비 변경시 준수사항

- 도급 변경계약일로부터 15일 內 수급사업자 통보
- 도급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內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미합의시 당사 변경계약안 송부 必)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등의 변경계약 요청이 있을시 준수사항

-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 (응답거부/지연 →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
- 납품단가 조정 신청사유 확대 (기존 : 원자재 가격 변동 → 공급원가의 변동) ※ 인건비, 기타비용 상승 등